

9월 15일 공부 자가 테스트

1. 甲은 2020. 2. 1. 자기 소유 중고자동차를 1,000만원에 매수할 것을 乙에게 청약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였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甲의 편지가 2020. 2. 5. 乙에게 도달하였다면 甲은 위 청약을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.
- ② 甲의 편지가 2020. 2. 5. 乙에게 도달하였다면 그 사이 甲이 사망하였다더라도 위 청약은 유효하다.
- ③ 乙이 위 중고자동차를 900만원에 매수하겠다고 회신하였다면 乙은 甲의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한 것이다.
- ④ 甲의 편지를 2020. 2. 5. 乙이 수령하였다더라도 乙이 미성년자라면 甲은 원칙적으로 위 청약의 효력발생을 주장할 수 없다.
- ⑤ 乙이 위 청약을 승낙하는 편지를 2020. 2. 10. 발송하여 甲에게 2020. 2. 15. 도달하였다면 甲과 乙간의 계약성립일은 2020. 2. 15.이다.

해설 및 정답

- ①(O) 청약도 의사표시이므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일반원칙에 따라 도달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.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(제527조).
- ②(O)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이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(제111조 제2항).
- ③(O)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(제534조).
- ④(O)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(제112조 본문).
- ⑤(X) 격자자간의 계약은 승낙을 발송한 때 계약의 성립한다(제531조).

정답 ⑤

2. 다음 중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- ① 대여금채무의 변제와 영수증 교부의무
- ② 대여금채무의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의무
- ③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
- ④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
- ⑤ 교환계약의 무효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

해설 및 정답

- ①(O)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는 동시이행관계이다(대판 2003다22042).
- ②(X)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, 영수증 교부의무와는 달리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(대판 2005.08.19. 2003다22042).
- ③(O)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당사자 상호간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(제549조).
- ④(O), ⑤(O)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상호간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(대판 1993.05.14. 92다45025).

정답 ②

3.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- ①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한 중첩적(병존적)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.
- ②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.
- ③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성립시에 현존할 필요가 없다.
- ④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요약자와 낙약자가 임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키는 행위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.
- ⑤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요약자는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.

해설 및 정답

- ①(O)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것이다(대판 2011다56033).
- ②(O)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(대판 2002다37405).
- ③(O) 특정·현존시점은 계약성립시가 아닌 수익의 의사표시면 충분하다. 따라서 아직 설립당기가 되지 않은 설립 중의 법인도 제3자가 될 수 있다(대판 1960.07.21. 59다773).
- ④(O)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(제541조).
- ⑤(X)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는 단독으로,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 제3자의 동의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(대판 1970.02.24. 69다1410).

정답 ⑤

4. 해제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- ① 매매계약 체결 후 목적물의 가격이 급등하여 약정한 매매 대금의 지급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게 되면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- ② 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합의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- ③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한다.
- ④ 당사자가 합의로 해제권을 유보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.
- ⑤ 해제권을 행사한 채권자가 다시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해제권 행사를 이유로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.

해설 및 정답

- ①(X) 매매계약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,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(대판 90다19664).
- ②(X)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의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(대판 2005.06.09. 2005다6341).
- ③(X)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이어야 하므로 이행불능이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거나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라면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,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.
- ④(X) 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벌에 관한 특약의 유무 등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(대결 89다카14110).
- ⑤(O)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(대판 2001다21441). 우리 시험에 정답지문으로 출제되기 어려운 부분이라 보여 집니다. 한번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

정답 ⑤